

[별표 1] <개정 2007. 2. 27., 2009. 2. 24., 2010. 12. 28., 2011. 10. 26., 2014. 12. 16., 2019. 2. 21.>

직원채용 공통자격기준

구분	자 격 기 준
임원 대우	1. 박사학위 취득 후 1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2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<삭제> 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	1. 박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1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<삭제> 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	1.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<삭제> 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	1.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 취득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1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
1급	1. 박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1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<삭제> 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2급	1.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1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<삭제> 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3급	1.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 취득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1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

구분	자격 기준
	9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4급	1.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9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5급	1. 박사학위소지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5.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6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9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6급	1.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인 자 <개정 2010. 12. 28.> 3.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0. 12. 28.> 4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4.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7급	1. 학사학위소지자 이상 또는 취득예정인 자 <개정 2010. 12. 28.> 2.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3.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>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<신설 2010. 12. 28.> 6. 진흥원 사무원직 2년 이상의 경력자 <개정 2011. 10. 26., 2019. 2. 21.> 7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

구분	자격 기준
사무 원직	1.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, 해당업무에 적합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

비고

1. <삭제>
2. 2급직위(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)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